

청주지방법원 2024. 5. 23 선고 2023가단80817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

담당변호사 이상명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25.

판 결 선 고 2024. 5. 23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②, ③, ④, ⑤, ⑥,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26.04㎡를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의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남동희

별지